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방안 연구

<연구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현황 분석	3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법제 및 자치법규 분석	3
제2절 주요 사례분석	22
제3장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추진방안	35
제1절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사항	35
제2절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및 조직구성	38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42
제4절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	63
제4장 마을만들기 사업화 및 공동체 지원방안	67
제1절 마을만들기 사업화 방안	67
제2절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추진 방안	79
제5장 결 론	86
참고자료(조례안 등)	89
참고문헌	100

표 목 차

<표 2-1>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5
<표 2-2>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7
<표 2-3> 도의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8
<표 2-4>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9
<표 2-5>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1	13
<표 2-6>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2	15
<표 2-7>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18
<표 2-8>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원칙	19
<표 2-9> 협동조합의 유형간 비교	20
<표 2-10>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례비교	22
<표 3-1>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에 따른 장단점	39
<표 3-2>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42
<표 3-3>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 및 실행방안	53
<표 3-4> 마을르네상스 추진방향	57
<표 3-5> 단계별 추진전략	58
<표 4-1> 2007년 이전 마을만들기 관련 최근 10년간 주요 지원사업	67
<표 4-2> 2007년 이후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지원사업	68
<표 4-3> 신활력사업의 유형과 사례	69
<표 4-4> 소도읍 육성사업의 유형과 사례	70
<표 4-5>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유형과 사례	70
<표 4-6>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의 사업내용	71
<표 4-7>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단계별	77
<표 4-8>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추진내용 및 방향	81

그림 목 차

<그림 2-1> 두레생협	23	<그림 3-13> 주요활동 중 공동체형성 및 복원 분야	51
<그림 2-2> 되살림가게 한뫼두레	23	<그림 3-14> 성북구 마을만들기 활동 (성북마을)	52
<그림 2-3> 성미산학교(대안학교)	24	<그림 3-15>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요 사업내용	53
<그림 2-4>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 어린이집	24	<그림 3-16> 성북구 마을만들기 관련 생태계 지도(성북마을)	55
<그림 2-5> 마을 도서관	25	<그림 3-17> 수원시 마울르네상스 3대 슬로건(마울르네상스센터)	56
<그림 2-6> 마을을전경	25	<그림 3-18> 마울르네상스 도시사업 (마울르네상스센터)	56
<그림 2-7> 삼각산 재미난 학교	26	<그림 3-19> 마울르네상스 마을사업 (마울르네상스센터)	57
<그림 2-8>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27	<그림 3-20> 지원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진안군 마을만들기)	60
<그림 2-9> 산새마을 주민회의 모습	28	<그림 4-1>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단계와 단계별 추진사항	73
<그림 2-10> 남문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풍물패	30	<그림 4-2> 기존 공모방식 국비지원 사업의 장기화·기금화	75
<그림 2-11> 경매체험을 하고 있는 '남문탐사대'	30	<그림 4-3> 기존 공모방식 국비지원 사업의 다단계화	75
<그림 2-12>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작은도서관'	32	<그림 4-4> 진안군 마을사업의 5단계 추진체계도	78
<그림 3-1>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방식	36	<그림 4-5>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추진 및 지원전략	83
<그림 3-2> 행정기구와 각급단위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40		
<그림 3-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41		
<그림 3-4>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조직도	41		
<그림 3-5>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미션 및 비전	43		
<그림 3-6>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활동(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44		
<그림 3-7> 전북 마을만들기 목적(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45		
<그림 3-8> 전북 마을만들기 주요사업(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46		
<그림 3-9>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요활동(강릉시마을만들기센터)	47		
<그림 3-10> 정읍형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48		
<그림 3-11> 정읍형 마을만들기 실행계획	48		
<그림 3-12> 주요활동중 생활환경개선분야(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5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1970년대에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함
- 이후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자립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됨
-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됨
-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3년 이후 도서지역 등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위주의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실시함
-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 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만일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날 경우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료·여가시설 등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부족으로 농촌의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목적

-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궁극적으로 이들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지엽적으로 조성한 마을들의 장단점을 분석·적용한 종합적·중장기적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나아가 연구결과를 기 조성 마을 및 신규 마을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가칭)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활용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검토를 통해 마을별 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표와 전략 분석
- 또한 외국 사례 연구를 통한 추진절차, 지원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미래 비전 및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될 내용들을 검토
- 이를 위해 각종 관련문헌 연구방법을 택하여, 국내외 마을(공동체)만들기 등에 관한 논문집, 연구보고서, 국회포럼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정리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국내의 각종 조례안을 분석 및 비교
- 이에 더해 중간지원조직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

제2장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연망 분석

제1절 마을만들기 관련 법제 및 자치법규 분석

1. 조례현황

-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각급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함
- 이들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둠
- 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들 조례의 주요 내용, 조직체계 등을 정리, 분석함

□ 분석대상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운영되어 있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경기 수원시 등 30여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분석 대상임
- 또한 지역공동체 지원이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울산 북구, 강원 양양, 전북 완주, 정읍의 조례를 참고함

2.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내용

□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지원조례의 내용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이 총칙, 마을만들기 지원 및 지원계획,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 총칙에는 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실현,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마을을 만드는 목적을 제시하며 마을, 자원,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기본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음
- 이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 주도하에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
- 이와 함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

□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복지증진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마을학교 운영,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문화, 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등을 포함함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마을만들기 관련 위원회에 관하여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역할과 기능, 구성 등임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심의, 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마을만들기 예산 및 집행계획,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해당됨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부 시군구 지자체는 30여명까지 그 구성을 확대하고 있음
- 위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지사, 부시장 등이 위원장을 의무적으로 역임하는 경우와 공동위원장 2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동위원장 2인의 경우로써 부시장 1인과 위촉직에서 1인을 선출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종합지원센터 형식과 전담부서 형식(경기도)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존재함
- 그 기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 지도자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됨
- 이러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현재 서울시, 전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위탁 운영함

□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 2-1>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 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3.15	제정	마을공동체 담당관
2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11	제정	
3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0.8.5	일부개정	
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8.1	제정	
5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9.12.28	제정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9.1.7	제정	

- 서울시를 제외한 5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마을만들기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조례의 명칭에 차이를 두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차이는 서울시 조례 제2조(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는 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함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09.1.7일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에서 '09.12.28일에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음
- 한편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는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야 제정이 되었음
- 서울시는 '12.3.1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 산하의 25개 기초자치단체중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간에 매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제정과 그와 관련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아래 <표 2> 참조)

- 이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로 마을만들기 관련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크게 전환된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또 다른 광역자치체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12.8.1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미 경기도 내에는 31개 기초자치단체중 6개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였음

□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는 마을만들기 형태의 지원조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조례'가 존재함
-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12.3.15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에 속해 있는 구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명칭에 있어서도 다른 광역시도와도 명확하게 구별되게 서울시 조례명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제정되었음
- 서울시내의 12개 기초자치단체중 강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 조례와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이며, 나머지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2>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 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2.9.12	제정	자치행정과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27	제정	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16	일부개정	기획예산과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28	제정	자치행정과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9	제정	정책담당관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2	제정	자치행정과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5.31	제정	정책과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20	제정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8.10	제정	자치행정과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14	제정	참여행정담당관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5.4	제정	마을공동체 지원팀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26	제정	자치행정과
13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7.10	제정	기획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12.6.4	제정	
15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	'08.7.31	일부개정	주민자치과
16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08.12.31	제정	

-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일시와 유사하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운영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의 경우 광역시 조례보다 2년여가 빨리 제정·운영되고 있음
-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6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음
-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관련한 시기들을 볼 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가 먼저 제정·운영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의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다음은 도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현황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6개, 강원도 2개, 전북도 3개, 전남도 2개, 경북도 1개, 경남도 2

개 등 총 16개 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한편 아래의 16개 도의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위의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와는 일정부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들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해 왔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중앙정부가 최근 수년간 진행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CB형 지역공동체 사업, CB 사업,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 자립형 공동체회사 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문화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북향토산업마을 육성 사업, 자연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있음

<표 2-3> 도의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자치법규명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부서
1	경기도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11.5.4	일부개정	마을만들기 추진단
2	경기도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조례	'12.8.8	타법개정	주민자치과
3	경기도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10.9.27	일부개정	
4	경기도 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	'08.5.13	제정	대외협력팀
5	경기도 하남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1.5.23	제정	자치행정과
6	경기도 화성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7.5	제정	재정법무 담당과
7	강원도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4.4	제정	정책기획과
8	강원도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08.6.23	제정	총무과
9	전북도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07.10.30	제정	
10	전북도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조례	'11.11.18	일부개정	도시과
11	전북도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10.5.31	제정	아토피전력 산업과
12	전남도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08.1.16	제정	기획홍보실
13	전남도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1.3.30	전부개정	건설과
14	경북도 영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2.5.11	제정	새마을담당
15	경남도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11.2.11	일부개정	행정과
16	경남도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조례	'11.7.29	제정	환경수도과

○ 한편 이러한 다양한 조례명칭과 제정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유사성이 많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비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비교하는데 있어, 일부 조례내용의 순서와 구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12년 제정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의 조례를 우선 비교·검토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전북도의 조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우선 관련조례의 핵심적 내용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 둘째,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셋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음

<표 2-4>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지역 (제정일)	구분	분 류	설 명
서울 (12.3.1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 예산범위내 사업비 지원할 수 있음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조사 10.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마을공동체 위원회	명칭 :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함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4. 종합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정무부시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심의후 재계약 가능
	마을만들기 사업	I.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뜻함 1.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3. 저소득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6. 경기도 사 군 마을만들기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I.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의료·교육·보육·교류·워크숍·포럼·국내외 견학 등의 행사 4. 마을만들기 관련된 연구조사 5.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유치 및 지원 등
경기 (12.8.1)	마을만들기 위원회	명칭 :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둠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4.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대상과 범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운영 구성 : 위원장1명(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당연직위원(업무관련 실국장) 및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임기 : 위촉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전담부서로 운영 하고 명칭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효율적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채용·배치함을 원칙 기능 :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의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6.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전파 7. 마을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지원 :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 가능
부산 (12.7.11)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각각 위원중 호선)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소속 3급이상공무원, 시의회 추천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기 : 위촉직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분석 및 평가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갱신 가능
전북도 (09.12.28)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 사업 지원 1.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도 협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1명(행정부지사), 부위원장1인(공무원아닌자 호선) 간사(마을만들기 총괄담당)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 이내 구성되며, 당연직(행정부지사, 담당국장), 위촉직(도의회 의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등)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임기 : 위원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마을만들기 지도자와 주민 교육 2.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마을만들기 연구조사 5. 마을만들기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기타 도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관리 및 운영 : 관련 법인이나 협의회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 가능, 위탁기간 2년, 재위탁 가능
-----------------	--

- 4개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주로 사업내용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특히 위원장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 위원장을 부지사가 하는 경우(경기도, 전북도)와 민관 각각 1인의 공동위원장(서울시), 위원 중 호선(부산시)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함
 - 각 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때, 위원장을 부지사로 당연직화하는 것은 주민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위의 관련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지원센터 또는 협력센터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를 전담부서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참여 및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민주도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비교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 존재하는 32개 기초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바, 이중 상호 비교가 용이하도록 동일 광역시 또는 광역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우선 비교·검토하며, 검토할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를 준용하기로 함
 - 또한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비교를 위하여 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 마

을공동체담당관과 같이, 유사한 마을공동체 관련 팀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팀), 양천구(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와 노원구(자치행정과) 조례를 임의 선택하여 비교하였음

<표 2-5>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1

지역 (제정일)	구분	분 류	설 명
공통		용어의 정의 (종로구 조례 인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마을학교"란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p>지원대상 : 행정지원 및 예산범위내 사업비 지원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 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조사 10. 기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울 종로구 (12.5.4)		마을공동체 위원회	<p>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조례 제20조의 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10-15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종로구의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p>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p>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 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재계약 가능
서울 양천구 (12.6.20)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로구와 동일
	마을공동체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조례 제20조의 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15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양천구의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p>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p>기능 : 종로구와 동일</p> <p>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가능, 위탁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p>
서울 노원구 (12.6.28)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로구와 동일
	마을공동체 위원회	<p>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p> <p>마을공동체와 동일</p> <p>구성 : 공동위원장 2명(부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중 1인), 부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 간사1인 총 위원수 및 자격 : 20명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위원3인(국장), 양천구의장 추천 2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 주민 대표 임기 :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p>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종로구와 동일

- 한편 타 광역시도내 기초지자체간 조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중 조례시행일시와 담당부서 등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 하남시, 강릉시 조례를 선택하여 비교하였음
- 조례의 주요내용은 최근 제정 운영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유사하며, 사업지원, 위원회, 지원센터로 구분되어짐
- 경기도 하남시 조례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강릉시 조례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표 2-6> 기초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비교분석 2

지역	구분	분류	설명
경기 수원시 (‘11.5.4, 일부개정)		조례명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만들기 학습·교육·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구성 : 위원장(제2부시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시의회 의장 추천 의원,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임기 :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연장가능
경기 하남시 (‘11.5.23)		조례명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 1. 지원대상사업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 호선), 포함 15명 이내 구성 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4명 이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 임기 :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존재하지 않음
강원 강릉시 (‘12.4.4)		조례명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지원내용 별도 명시없음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포함 12명 이내 구성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지원센터소장 위촉직 : 마을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임기 :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1.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3.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 및 운영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연장가능

3. 시사점

□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원칙

-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함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
-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함
-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함
-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함

□ 마을만들기 위원회

- 주로 사업내용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
-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선출관련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 각 자치단체 조례의 목적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때, 위원장을 부지사로 당연직화하는 것은 주민주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각 자치단체 관련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지원센터 또는 협력센터라 칭함
- 일부 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전북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취지에도 부합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를 전담부서화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주민참여 및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광역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와는 일정부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들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해 왔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이들 역시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광역자치단체의 그것과 유사성이 많음

4. 협동조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소규모 단체가 법인화를 추진하는데 법적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음
- 구성은 총 6장, 제1조부터 제119조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부칙으로 구성됨
- 이 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조직임을 알 수 있음(「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목적 및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2-7>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부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 협동조합은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되며 다양한 법인형태가 가능함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격은 제한이 가능함
-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이러한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크게 7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3가지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2-8>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 운영원칙	우리나라 기본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⑥ 협동조합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들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 법인이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사업 범위의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목적규정이 없으며 10/100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게 이윤의 배분이 가능함
-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 범위와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고 있음

<표 2-9> 협동조합의 유형간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성격	영리/비영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인증	노동부장관 인증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각 부처 위임가능)
사업범위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사업범위 제한 없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복지 증진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자리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사회적 목적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 비율	규정없음	위 항목 중 주 사업의 40% 이상
이윤배당	이윤의 1/3범위내에서 가능(영리기업)	잉여금의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 협동조합 목적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 생존의 필수요건임
 -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의 참여 없는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우며 의식적인 공동체 발전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들이 많음
 - 캐나다 퀘벡지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퀘벡의 협동조합 모델로 한 공동체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이 갖는 의미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을 연구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킴
 - 협동조합은 투자나 공급가격 결정시 조합원의 이익 및 요구,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 등 이윤 외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함. 따라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착도가 높고, 지역자원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뿔뿔이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지역 기업이라 할 수 있음
 -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와 시장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실업문제, 고령화, 빈곤양극화 및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써 모델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마을기업 등에 범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사회단체 및 지역민이 함께 결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하게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의 제정·운영과 함께 설립·운영 중인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협동조합 지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제2절 주요 사례분석

- 다음은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표임

<표 2-10>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례비교

구분	특징	시사점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주도하에 소규모 집단(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시작하여 마을공동체 형태를 형성	마을기업을 통한 이윤발생 및 고용을 창출, 공동기금을 통한 자족적 마을공동체 운영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확장가능성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재능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	돌봄에서 시작해 교육, 생활, 문화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는 형성중인 종합공동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 마을	주부들의 독서모임이 마을도서관과 마을학교로, 나아가 에너지 자립마을까지 확장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주민모임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과정
서울 은평구 산새마을	낙후된 '달동네'를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형성	외부인(두꺼비하우징)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한 경우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공동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門前成市) 프로젝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 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시장문화 활력소'와 시장상인이 주축이 되어 함께 시장 내에 도서관 건립하며 공동체 형성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문전성시프로젝트의 한계를 보완한 상인들의 상업적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제 분야 사업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

1.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 마을현황

- 성미산 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 자락에 위치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마을기업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음
-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1994년 이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 연장선에서 2001년 성미산지킴이 운

등을 계기로 '성미산마을'이라는 명칭이 생김

- 현재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 FM(소출력공동체라디오), 되살림가게(재사용순환), 한담두레(바느질 작업장), 작은나무(마을 카페), 마포연대(풀뿌리 시민단체), (사)사람과마을(마을만들기 단체),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자활센터, 마포 장애인학부모회 등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두레생협,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마을극장, 그리고 성미산공방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기업 및 프로그램이 운영
- 초기에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소규모의 조직이 형성되었으나, 방과 후 교실 등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및 출자금 확보를 위해 마을기업인 두레생협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형성이 본격화 됨
- 두레생협을 기점으로 소수공동체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전환 및 확산되기에 이르러 현재는 공동출자금을 통한 다양한 마을기업(성미산학교, 성미산극장 등)의 설립을 통해 이윤 및 마을주민의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있고, 공동기금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문화만들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성미산 축제, 작은음악회, 가을운동회 등)하고 있음



두레생협

<그림 2-1> 두레생협



되살림가게 한담두레

<그림 2-2> 되살림가게 한담두레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성미산학교(대안학교)

<그림 2-3> 성미산학교(대안학교)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어린이집(도토리)

<그림 2-4>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 어린이집

□ 효과

- 마을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공동육아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는 대안학교, 마을카페, 밴드, 극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종합공동체'가 형성됨

□ 문제점

- 성미산 마을만들기가 사회적 자본이 있는 '중산층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음
- 즉 사회적 자본이 있으니 가능했던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의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에 부적합한 모델에 해당함
- 또한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여 주택문화적인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들 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주도하여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이윤발생 및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공동기금을 통한 자족적 마을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2.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

□ 마을현황

-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역사는 1998년 형성된 돌봄 공동체 '꿈꾸는 어린이집'에

서 시작되어 대안 초등 교육기관 '재미난 학교'로, 이후 2011년 5월 사단법인 '재미난 마을' 설립으로 이어짐

- 마을은 4·19 국립묘지를 중심으로 남북 3.5km, 동서 2km에 자리 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동을 아우르지만, 이 지역 안에 사는 사람 모두가 마을 주민은 아님
- '재미난 마을' 법인 회원은 150여 명이며, 이들은 '재미난 밴드', 10대에서 40대로 구성된 '백세밴드', 마을카페 '재미난 카페', '마을 목수 공작단' 등 총 13개의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2-5> 마을 도서관

출처: 서울시 온라인 뉴스 <http://inews.seoul.go.kr>



<그림 2-6> 마을을전경

□ 추진내용

- 재미난 마을에서는 손이 남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으로, 재능이 있는 이들은 강의로 '나눔'을 실천함
- 마을카페 '재미난 카페'와 마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 곳곳에서는 동아리 혹은 강의들이 수시로 이어짐
- 현재는 타로, 목공, 사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재능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 일회적인 소비 시스템과 차별화된, 나눔의 순환을 재미난 마을의 핵심 요소로 하여 재능나눔을 중심으로 마을을 응집시키고, 주민들이 서로 돕고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2-7> 삼각산 재미난 학교

출처: 서울시 온라인 뉴스 <http://inews.seoul.go.kr>

□ 시사점

- 향후 주민스스로 마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극장과 마을 사람들이 이웃들과 자신이 가진 역량을 나눌 때 필요한 공간,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 낼 수 있는 마을 신문,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많음
- 이를 통해 기업이 육성되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활동 모델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임
- 재미난 마을은 돌봄에서 시작해 교육 그리고 생활, 문화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는 형성중인 종합공동체임
- 자녀 교육을 위해 시작된 공동체가 주민 전체의 삶을 바꾸는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으며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 재미난 마을은 육아와 교육, 문화생활을 함께 하고 경제 활동까지 마을 안에서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복지정책 중의 하나의 모습으로 의미를 가질 것임

3. 서울 등작구 상도동 성대골 마을

□ 마을현황

- 지역의 풀뿌리단체인 '희망동네'가 2009년 아름다운 가게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고, 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촉발되기 시

작

-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는 방과 후 대안학교로 '성대골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임



<그림 2-8>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 추진내용

-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뮤지컬 교실 등과, 사회적 기업인 '결혼이주 여성평등찾기'와 연계해 이주여성들로부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어린이 특기 적성 교육, 부모교육, 학교세우기 운동, 인조잔디 반대운동 등을 함
-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성대골절전소'도 설치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각 가정별로 절전운동을 벌이고 있음
- 성대골절전소는 가정별로 절약한 에너지를 합산해 눈으로 확인하는 운동으로서 이를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성대골마을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가구당 20% 전기 절약을 목표로 온 가족이 에너지지킴이로 멀티탭을 사용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성대골절전소'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도서관, 마을학교에 기반한 절전 운동으로 에너지 진단과 단열 개선을 할 예정임

□ 효과

- 마을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대안학교로 이어진 마을 공동체 활동이 현재는 절전 운동으로까지 이어져, 단순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현재는 환경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음

□ 문제점

- 마을주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음
- 대안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고, 주부들 이외의 다양한 연령, 성별 층의 참여가 요청됨

□ 시사점

-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주부들의 독서모임이 마을도서관과 마을학교로, 나아가 에너지 자립마을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는 주민모임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서울시 은평구 산새마을



<그림 2-9> 산새마을 주민회의 모습
 <출처: 오마이뉴스 2012. 8. 28일자 기사, '달동네의 변신' 은평구 산새마을.>

□ 마을현황

- 산새마을은 서울시 은평구 봉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버스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달동네'임

- 마을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고 저소득층 비율이 높으며, 구성원은 50~60대 장년층이 주를 이룸

□ 추진내용

- 2011년 3월 봉산 등산로 입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들이 함께 치우면서 공동체의 형성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2011년 6월 은평구청과 사회적 기업 (주)두꺼비하우징이 함께 산새마을을 '두꺼비하우징 사업'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 두꺼비하우징은 뉴타운 재개발 등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달리,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뉴타운 방식에서 벗어나 낡은 집을 수리·관리하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효과

-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반상회 안 하던 마을사람들을 매주 마을회의에 참석하게 만들고, 공동텃밭을 일구어 수확물을 인근 복지관에 무료 급식용 재료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학교를 열어 주민참여 역량을 키움
- 또한 마을회의를 통해 인근의 초등학교 개방 시간 확대·후문 설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마을주차장 조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집 명패 만들기, 영정 사진 촬영, 의료생협 왕진, 벽화그리기 등 마을 프로그램들의 일정을 소개하며, 공동체 스스로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 낙후된 '달동네'를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살려낸 산새마을은 이제 느슨한 공동체를 넘어 협동조합을 꿈꾸고 있음
- 마을 사람들이 조합의 회원이 돼 회비를 내고 마을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임
- 조합비로 마을 내의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의 안전과 청결 유지를 꾀할 수 있고, 또 인근산에 과수원을 조성해 산새마을이 관리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장년층이 많은 산새마을에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음
- 산새마을은 외부인, 즉 (주)두꺼비하우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외부인과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5.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공동체



<그림 2-10> 남문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풍물패
 <출처: 오마이뉴스 2012. 9. 4일자 기사,
 '전통시장과 예술의 만남'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공동체>

□ 마을현황

- 남문시장은 1970~80년대 '산업화의 메카'였던 구로공단이 사라지고,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침체기를 맞음
- 20~30년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과, 120개의 점포가 양 옆으로 쭉 늘어선 남문시장은 어느 시장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재래시장이었지만,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함

□ 추진내용



<그림 2-11> 경매체험을 하고 있는 '남문탐사대'
 <출처: 오마이뉴스 2012. 9. 4일자 기사,
 '전통시장과 예술의 만남'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공동체>

-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로 20~30대로 구성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자바르메'가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맡았음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자바르페는 2011년 5월부터 '시장통 문화학교'라는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추진했으며 상인들의 수요가 높은 기타, 미술, 풍물, 합창이 수업 과목으로 정해짐
- 1년여가 지난 현재(2012년 9월), 매주 월요일에는 기타와 밴드, 화요일에는 합창, 수요일에는 중국어, 목요일에는 풍물과 스윙댄스 수업이 열린리며, 수업 인원은 적게는 7, 8명에서 10, 11명이며, 각 수업에는 남문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남문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스로스+르'이라고 적힌 동그란 간판이 달려 있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소량 맞춤 생산+예술'의 줄임말로, '예술네트워크' 시범가게임
- 이는 상인들과 예술가들을 접목시켜, 뽕엘김구이, 태초두부, 꼬끼리튀김, 한가네낙원떡집, 이레수제어묵 등 5개 점포에 각각 한 명의 예술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문화적 특성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

□ 효과

- 각기 다른 점포를 가진, 각자가 사장인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시장통 문화학교, 예술네트워크, 남문탐험대, 시장 축제 등을 통해 상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이제 남문시장 상인들의 과제는 시장을 살릴 지역주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일임
- 동아리 활동 중에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시장 상인과 주민을 엮어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아리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남문시장 '꿈다방'이라는 공동체 카페를 새롭게 오픈하여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이어주는 허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들 스스로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자생력을 갖는 것으로 이를 위해 상인들을 중심으로 '문전성시 조직위'를 꾸려 사업 종료 후에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임

□ 문제점

- 이러한 노력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후속작업으로 공동브랜딩화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며, 나아가 적절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구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門前成市) 프로젝트가 진행된 남문 시장은 문화예술공간이자, 관광지로 탈바꿈했음
- 이곳 시장 상인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타, 노래, 무용 등 동아리 활동을 하며 유대를 단단히 하고 있음
-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6.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그림 2-12>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작은도서관'
 <출처: 오마이뉴스 2012. 9. 12일자 기사,
 '시끌벅적' 시장에 도서관이...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 마을현황

- 수유마을시장은 인근의 건물형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을 묶어 붙인 명칭임
- 세 곳을 합치면 점포가 350여 개, 상인과 직원이 1000여 명, 유동인구만 하루 1만 3000여 명으로, '시장으로 이루어진 마을'임

□ 추진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시

장문화활력소'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책수레는 시장 곳곳을 돌면서 책을 대출해주는 사업이었음

- '시장문화활력소'는 전통시장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체로 2009년 6월부터 2011년 말까지 수유마을시장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맡았음
- '시장문화 활력소'와 함께 인문학 분야 책을 즐겨 읽던 상인이 주축이 되어 함께 시장 내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음
- 상인들에게 책을 기부받고 사비를 보태 상인회 사무실 옆 창고를 도서관으로 마련하여 작은 도서관은 현재 시장상인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음
- 2011년을 끝으로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마무리됐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임
- 시장 카페 '다락방'에서 열리는 서예, 전통춤인 한춤, 글쓰기 등의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2011년 11월에는 공연 동아리로 이뤄진 문화예술단이 시장에서 공연을 열어 큰 활력소가 되기도 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인근 초등학교들의 '어린이 시장탐험대'가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이 선생님이 돼 아이들에게 생생한 경제 수업을 열고 있음

□ 문제점

- 시장이라는 특수 여건하에서 개인의 여건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상인들은 '자영업자'라는 특성 때문에 단합이 어려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상인들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시사점

-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문전성시프로젝트의 한계를 보완한 상인들의 상업적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제 분야 사업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문전성시 프로젝트처럼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생활형 문화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창작활동 공간으로의 변신이 필요할 것임

제3장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추진방안

제1절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사항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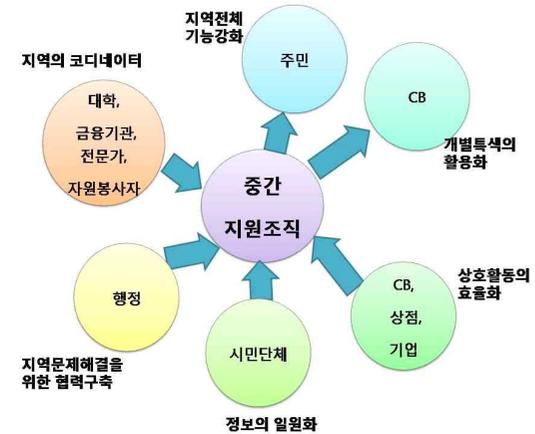
□ 개념

- ‘중간지원조직’은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해 왔던 개념으로 단지, 시민사회 속에서 다루어지거나 발휘되었던 기능의 비중이 작았기에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부터 등장했던 개념으로, 이미 보편적인 용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전 시기에 순수한 불투터 활동만을 펼쳐왔던 NPO(Non Profitable Organisation)들이 지역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들을 보다 조직화시키고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립하게 된 NPO지원센터는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초기모델이라 할 수 있음
- NPO와 행정, 기업, 주민간의 중개적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과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지원해주는 기관
 - 다원적 사회에 있는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간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간의 중개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

□ 필요성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 및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함
- 행정영역에서 풀어내기 어려우며, 일부의 리더나 소수의 구성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비즈니스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 안팎의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가진 지원조직이 필요함

- 과거에는 중앙주도형으로 제도나 정책을 통해 행정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음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이자, 지역사회 문제를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3-1>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방식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_건국대학교 등)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기본적 역할

-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의 제공 역할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주민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및 지역재생을 목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마을 자원확보를 위한 계획 및 기금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사회 파트너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위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고, 물리적, 사회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건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의 기능을 수행함
-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조직, 기타 마을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계획수립을 지원함
- 마을만들기 정책과 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마을만들기 업무의 전달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광역단위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연구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 및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앙과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고 마을만들기 업무의 전달과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 정부의 행정기관별 마을만들기 지원 유사사업을 광역단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초단위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광역단위 마을만들기 사업 기반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마을만들기 관련 실제적 현장인 기초단위에서 민관이 단순한 거버넌스의 형태 유지 뿐 아니라, 공동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천을 할 수 있는 체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관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이러한 조사 및 모니터링 내용은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과 공유함으로써 광역-기초 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함
- 기초단위 마을만들기 체계,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내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상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 세미나, 포럼 등을 실시하여야 함

제2절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및 조직구성

1.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 일반적 형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다양한 교육, 홍보, 사업계획 수립지원 등을 수행하고 단체들간의 또는 수요자들과의 각종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적 형태
- 정부와 지역레벨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주는 형태의 조직
 - 정부와 시민섹터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마을인재육성, 자금조달, 전문가 연계 등 불런터리, 커뮤니티섹터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함
- 마을과 지역내에서 다양한 단체 및 주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코디네이터
-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
- 공공부문,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주민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과 마을만들기 다양한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활동을 연계해주는 조직

□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 형태

○ 관주도적 직영운영

-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예산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구성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 민과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의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법인으로의 업무 위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민간주도형 민간위탁 운영

- 민간이 설립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속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원센터 자체의 계획에 따라 운영
- 마을리더와 주민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할 수 있으나, 마을만들기 이해당사자가 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

○ 혼합위탁형 운영

- 지원센터의 설립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
- 자치단체와 협의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결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마을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업무일부를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한계를 갖을 수 있음

<표 3-1>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관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안정적 확보 ● 뚜렷한 목표성과 도출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 ●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민간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의 유연성 ● 시민센터의 높은 주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의 어려움 ● 운영에 있어서 높은 전문지식 요구
혼합위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의 유연성 ● 예산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적 성과도출 필요 ● 운영주체의 능력 중요

- 중간지원조직 형태를 다음과 같이 상설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상설형 : 전용공간인 사무국을 따로 두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전담, 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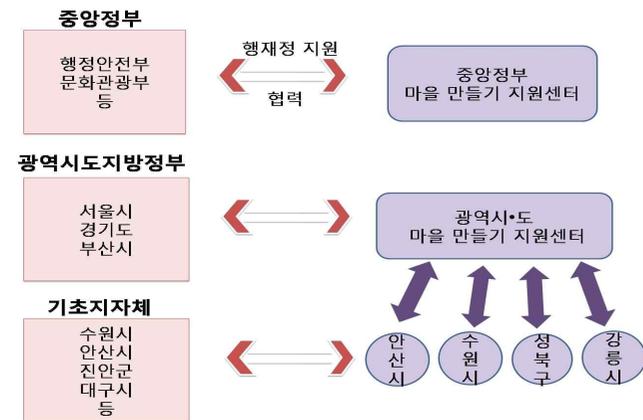
고정비가 높아 예산운영상에 불리

- 네트워크형 : 전용사무국 없이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연락체계를 두고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소규모 센터의 형태로 체계를 갖추어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함. 초기 네트워크형태로 운영후 사업의 확대 발전수준을 고려해 상설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다만 협력하는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자발성이나 중간지원업무에 대한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 있음

2. 중간지원조직의 조직구성

□ 행정기구와 각급단위 중간지원조직간 관계

- 중앙정부, 광역시도지방정부, 기초지자체 등의 행정조직간의 관계와는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음
- 각급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정부부처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고,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관련 각종 업무를 협력 지원함
-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원센터는 독자적인 운영 및 업무체계를 갖고, 광역단위 지원센터와 기초지자체 지원센터, 또는 기초지자체와는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함
- 이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227개 기초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지원센터가 기초단위가 수행해야 할 지원센터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그림 3-2> 행정기구와 각급단위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체계

○ 다음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도임



<그림 3-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무국, 경영지원실, 마을지원실, 마을기획실, 홍보협력실 등 5실국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은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조직도임



<그림 3-4>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조직도

- 전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상임대표, 총괄국장, 현장지원팀, 기획운영팀, 네트워크지원팀, 귀농귀촌지원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며, 기타 14개 시군마을만들기팀, 지자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향토산업 마을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등이 있음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1.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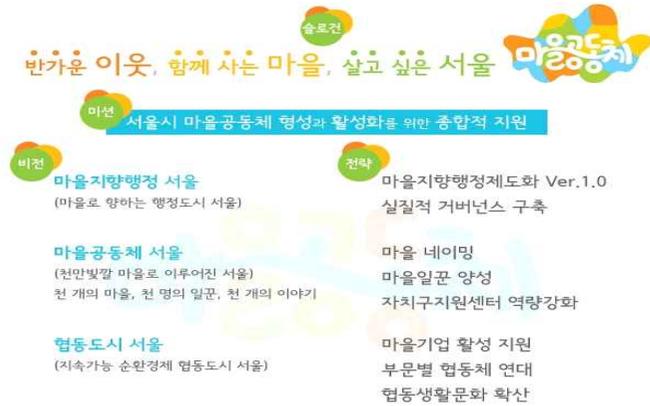
○ 다음은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나타낸 표임

<표 3-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련조례	설립연도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부산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8
전북	전북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
경기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
서울 성북구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
인천 부평구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부평구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조례	2010
광주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	2006
경기도 수원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2011
경기도 안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2008
강원도 강릉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강릉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08
충북 청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2012
전남 순천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조례	2011
전북 정읍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조례	2012
전북 완주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조례	2010
전북 진안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진안군 살기좋고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2010
경남 창원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창원시 으뜸마을만들기 조례	2011

2.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림 3-5>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미션 및 비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역할 및 기능

- 마을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4개 시책, 35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이 주도하는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결합되어 마을 아이디어가 마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목적 및 사업

-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이 최초의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 마을주민들 사이에 주체가 일부 형성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

○ 주요사업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 마을기업의 육성,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의 복지 증진,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등

- ‘마을 공동체 위원회’와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 주거·복지·문화·경제공동체 사업 추진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 역할 및 기능

- 전북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이 민관협력 모델이자 중간지원조직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전국 광역단위로는 처음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지원함
-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마을 선정을 지원함
- 실질적인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 소득의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지원함
- 다양한 지역자원을 개성 있게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188개 전북 고유의 브랜드 마을육성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임



<그림 3-6>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활동(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 목적 및 사업

- 전국 유일의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의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북도 내 성공적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자원을 개발
- 기반 자원을 토대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 경제 활성화 그리고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기관으로 사업을 운영
- 전라북도 내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마을만들기 교육·홍보 등을 담당
- 국·도비 사업의 추진 과정 분석·평가, 지자체 추진 사업지원 등 마을만들기 현장 자원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임



<그림 3-7> 전북 마을만들기 목적(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 주요사업

- 전라북도 지역자원조사, 소득자원 발굴 DB구축을 지원함
 -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활용 방안 모색
 - 마을공동사업, 新소득창출 대안 모색
 -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진 마을주체 특화브랜드 육성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 전라북도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함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지원
 - 지역 구성원들간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사업의 추진 활성화 및 성공적인 안정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원
 - 대상마을의 사업성과를 홍보책자 발간 등 실질적 마을 홍보방안 마련



<그림 3-8> 전북 마을만들기 주요사업(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3. 기초지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강릉시 마을만들기센터

○ 역할 및 기능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지역 내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활동공간이자 외부 견학팀 대상 전시, 홍보공간임
-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리더, 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일상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정보교환, 사업기획·점검 등을 하는 거점공간임

○ 지원센터 설치 추진방향

-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의 유기적 결합과 네트워크 형성
-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의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주민에게 정보제공
- 상시적인 주민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리더그룹을 육성
- 전문가 그룹의 지역 주민 직접 대면을 통한 현장성 제고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등 마을관련 각종정책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상시지원

○ 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강화

- 마을만들기 정보의 수집·제공
- 주민·행정·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마을만들기 장기발전방안 연구



<그림 3-9>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요활동(강릉시마을만들기센터)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CB 사업, 마을기업 육성, 마을축제 추진
- 사업주체, 기업, 국내외 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 사업
-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공형 사업
- 마을만들기, CB 사업, 마을기업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개발 지원
-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 지원

○ 정읍형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그림 3-10> 정읍형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 정읍시 마을만들기센터

○ 역할 및 기능

-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다양한 공동활동으로써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함
- 마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임

○ 목적 및 사업

-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 마을별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 활동가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수행
-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의 선정·집행·분석·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 실행계획



<그림 3-11> 정읍형 마을만들기 실행계획

○ 마을만들기 추진사항

- 마을만들기 설명회 개최 : 마을만들기 추진배경, 개념 등 설명
- 정읍시 마을공동체육성 조례(안) 관련 토론회 : 조례와 관련된 토론회,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
- 정읍시 마을만들기 공동 회의
- 마을만들기사업 “희망콘서트” 참석
- 마을만들기 지역리더과정운영
- 정읍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 교육
-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방문 : 지역사회순환센터 건립과 관련 자문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역할 및 기능

-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 센터를 설치했음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고 주민스스로 마을만 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써, 그 첫 번째 목표로 주민지도력 육성에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교육지원/사업지원/전문가지원/연대지원/정책연구의 5가지 지원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음

○ 목적 및 사업

-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
-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
-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 추진배경

- 넉넉하지 않은 시민과 풍족하지 않은 지역정부, 그리고 계획도시로써 양호한 도시환경에도 불구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안산시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시작된 배경임
-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한 신도시이지만 도시개발이 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주율(移住率)을 보여주듯이 여전히 시민들은 안산시에 정

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그래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안산시민들이 안산에 오래 살 곳으로 이해하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고향으로 가꾸어가자는 취지에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음

○ 추진과정

- 안산시의 마을만들기는 90년대 후반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마을만들기 운동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대 들어서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주민/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마을축제 활동을 개최하였고, 큰 성공을 거둠
-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그 활동이 중지되었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안산의제21(local agenda21)를 거점으로 시작
- 안산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가 발족되어, 2년 반 동안 약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7년 드디어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개소됨

○ 주요활동

- 주민학습
 - 마을만들기 성공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지속적인 학습에 있음
 - 마을만들기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육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함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다양한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반영하여, 단계별/수준별 맞춤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마을주민대학과 마을디자인대학은 2011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인증을 받았다.
- 주민공모사업
 - 센터 개소와 함께 진행되어 지난 5년 동안 총 100여개(중복포함)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진행되고 있음
 -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벽화, 담장 허물기, 보행환경 개선 등의 생활환경개선분야와 교육, 마을축제, 콘텐츠 제작 등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분야가 있음

- 신청자격은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주민조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일 때 가산점을 주고 있음
- 연구와 정책개발
 - 마을포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초청하여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열린 세미나임
 - 마을연구는 마을만들기가 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지원을 통해서 심화된 마을실태조사와 마을비전만들기를 수행하고 있음. 마을연구의 결과는 마을포럼의 주제가 되기도 함



<그림 3-12> 주요활동중 생활환경개선분야(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림 3-13> 주요활동 중 공동체형성 및 복원 분야

□ 성북구 성북마을

○ 역할 및 기능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개발위주의 도시화로 인해 잃어버린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고유의 정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활동을 말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함



<그림 3-14> 성북구 마을만들기 활동 (성북마을)

○ 목적 및 사업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공공·민간·주민 간 파트너쉽 형성
- 교육, 상담, 공동활동으로 마을 주민의 자치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 마을이 갖는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 서로 달라도 공존하는 공동체만들기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향점 및 추진방향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함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둠
-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 함

<표 3-3> 성북구 마을만들기 목표 및 실행방안

연차	목 표	실행방안
2012	주민 역량 강화 파트너십 강화 홍보 및 교류	지역자원조사 주민조직(리더) 발굴 및 주민교육 관-민, 민-민 파트너십 강화
2013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도시재생)발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 연계	주민교육 주민참여 시범마을사업 추진 민-민 코웬사업 추진
201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도시재생)활성화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주민교육 주민참여 시범마을사업 확산 사회적 기업 아이템 발굴 국내외 교류

○ 주요사업



주민들과 만나고 참여를 지원함

-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주민모임을 돕고, 해결이 시급한 마을의 문제를 함께 찾음
- 설명회, 간담회, 마을회의를 통한 자치적 마을만들기 능력 강화
- 주민조직과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간 협력 지원



주민의 역량 강화를 도움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만들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시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 학교 진행
- 주민들이 느끼는, 찾아낸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 '시범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워크숍, 사례발표회, 연수 진행



마을을 마을답게 하는 주민의 주민활동을 지원함

- 공모사업의 실행과 시범마을사업의 주민활동을 지원
- 도시재생, 마을경제 활성화 등 진전된 활동을 주민과 함께 함



더불어 일하는 사회적경제, 민간단체와 마을을 이어나감

- 성북구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기관, 민간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전문가가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단단하게 하기
- 다양한 민간단체, 기업과 마을이 교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고, 단단하게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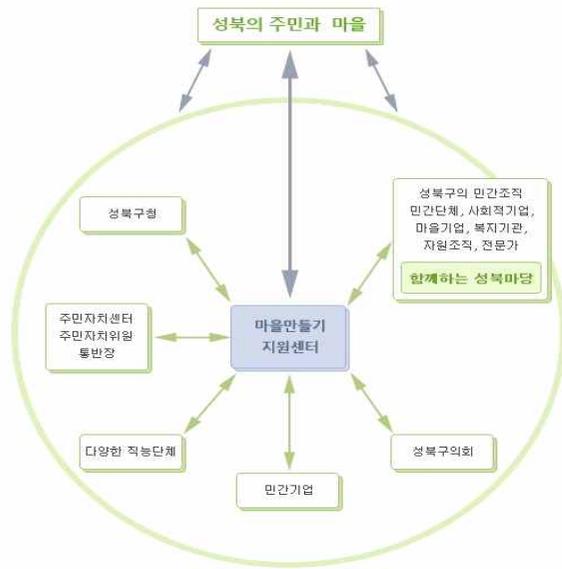
<그림 3-15> 성북구 마을만들기 주요 사업내용

○ 실천활동

- 함께하는 마을을 위한 열린마당 만들기
 - 성북도시아카데미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기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열린 배움의 마당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마을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지원하는 실천의 마당
- 찾아가는 마을 학교 : 더불어 사는 동네를 방문하여 마을만들기를 알려드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유의 마당
- 토론회,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주민, 단체,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변화사례를 나누는 정보의 마당
- 마을의 사회, 경제적 생활환경 개선
 - 재미있고 창조적인 참여의 장 열기 :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등 무지개빛 공동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
 - 마을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기 :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으로 우리동네와 이웃마을을 이해하기
 -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연결하기 : 복지/교육/의료/문화/예술 등 주민이 필요로 하고, 공공과 민간이 가진 자원을 잘 나누기
 - 지역경제를 살리기 : 작은가게와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세우기,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등에 여럿이 함께하기
- 마을의 물리적 거주환경 개선
 -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주민들이 새롭게 만들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 꽃길, 담장 허물기, 도로정비 등 마을환경이 개선되도록 마을의 뜻을 모으고 자원을 연계하기
 - 차 없는 거리 만들기, 가로 환경정비 등을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마을길 가꾸기
 - 참여형 마을계획을 기초로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 일상관리해서 오래되었지만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가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속한 성북구 마을만들기 생태계 지도



<그림 3-16> 성북구 마을만들기 관련 생태계 지도(성북마을)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 마을르네상스의 역할 및 기능

- 마을르네상스는 주민-행정-3그룹(단체, 전문가, 학교, 기업 등) 세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에 의해 추진됨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세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활동과 주체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활동함
-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며, 민간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르네상스의 중간지원조직임
- 주민이 스스로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실천하는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
- 마을르네상스는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범 시민운동임

마을르네상스 3대 슬로건



<그림 3-17>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3대 슬로건(마을르네상스센터)

○ 목적 및 사업

-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화 : 각 주체들간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각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교육과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시간별,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교안과 방안 개발
- 정보의 허브 :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와 연구결과가 집결되고 다시 확산되는 정보의 허브
- 마을르네상스 일꾼들의 열린 마당 : 마을르네상스 일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상호 교류하는 열린 공간
- 마을르네상스의 보급 창고 : 마을르네상스 과정에 필요한 유, 무형의 자원 제공
- 마을르네상스 사업 중 도시사업은 마을별 테마 공간중심의 시설조성과 휴먼시티 공간조성을 통한 도시르네상스를 지향하는 사업임



<그림 3-18> 마을르네상스 도시사업 (마을르네상스센터)

- 마을르네상스 사업 중 마을사업은 마을의 조사 및 체험 등의 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공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말함



<그림 3-19> 마을르네상스 마을사업 (마을르네상스센터)

○ 마을르네상스 추진배경

- 수원시는 급격한 외형확대에 따른 도시의 중심이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에는 있으나 마을은 없고, 사람은 살지만 이웃은 없는 내면적 변화를 겪고 있는 과도기에 직면함
-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변화 모색의 움직임과 더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게 되었음

○ 마을르네상스 추진방향

<표 3-4> 마을르네상스 추진방향

구분	내용
주민의식과 행동	환경중심, 주거의 쾌적성 추구
지방자치 실현	진정한 시민참여로 전환
거버넌스 지방정부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 마을르네상스 추진전략

- 마을 르네상스를 통해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고자 마을과 도시에 대한 관심을 증대
- 이웃 간 신뢰와 공동체를 회복하여 환경수도, 인문학 도시, 화성 르네상스,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함

<표 3-5>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내용
1단계(2011) 지역형 마을르네상스	지역형 마을르네상스 기반 구축 ● 마을현황 및 자원조사 ● 마을 공동체 구축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 마을르네상스 운영 매뉴얼 구축 ● 시민의 자발적 참여체계 마련
2단계(2012)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모델 개발 ● 지역별 마을르네상스 사례 구축 ● 마을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 ● 마을르네상스 콘테스트 개최
3단계(2013 이후) 한국형 마을르네상스	한국형 마을르네상스 모델 개발 ● 대한민국형 선진 도시모델 보급 ● 마을르네상스 컨텐츠 보급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전국 마을르네상스 콘테스트 개최 ● 마을르네상스 국제학술대회

○ 마을르네상스 지원체계

- 마을만들기 조례 : 마을르네상스의 체계적인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원시에는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행정협의체의 구성과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였음

판단, 퇴출이나 탈락은 마을의 고유기능을 부정할 결과를 초래함

○ 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

- 진안군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 : 2003년 으뜸마을가꾸기, 2008년 그린빌리지 사업 등 10년 역사
-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백화점 : 다양한 영역(체험마을,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등)의 시도가 집중
- 진안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집중 : 마을만들기 주민 지도자, 계약직 공무원, 귀농귀촌인 등
-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로 정착중 : 연간 150팀, 2,500명 이상 방문

○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

①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

- 주민 주도 상향식의 농촌 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부터 도입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 출발점
- 2007년 2월, 전국 농촌 최초로 군청 마을만들기 담당 신설
- 2008년, 소액 지원 경관 중심의 '그린빌리지' 사업을 도입

② 마을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

- 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인력 보완 시스템 구축
- 마을 단위 사업에서 면소재지, 군 단위 네트워크로 확산
- 마을 경관과 경제 사업에서 문화, 복지, 환경으로 확산

○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

①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TF팀 구성

-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행정 전문성 강화
- 전국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2007.02)
- 마을 단위 사업의 행정 협조를 위한 TF팀 구성(2007.3)
- 행정 창구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민간 그룹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공무원 업무 경험자의 순환풀 형성에 기여

②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

- 7개 담당별로 분산 추진되는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 1단계에 해당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주민 공동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발전
- 기존의 행정 편의 혹은 의원 로비 등을 통해 사업지구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
- 주민들도 마을 공동활동을 열심히 하면 소득사업도 가능하고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

③ 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 2008년 2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임시 사무실 개소
- 2008년 8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규 설립 필요성 제기
- 2010년 예산 확보, 2011년 리모델링, 2012. 10월 준공
-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성과를 모아 핵심 거점공간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자부심을 제공

④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통합 : 기본조례 제정

- 기존 활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의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정(2010.5 공포)
- 향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공간 구축, 거버넌스 정책협의회 구성, 매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임
-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안정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 평가

- 마을과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비
- 기관, 단체는 행정 사업에 지나치게 우왕좌왕 하지 않아야 함
- 풀뿌리 활동은 상호연계하여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해야 함

제4절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

1. 중앙부처와 중간지원조직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업무 중심의 중앙부처만으로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그 한계가 있기 마련
- 각급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광역시도와 시군 지자체 및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간을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해두어야 함
-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가령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

- 지역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지역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대부분의 조례에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은 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그리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 등이 해당함
- 이와 함께 지역의 리더로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 광범위하게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경우에 따라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이들은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 즉 중간지원조직은 상담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전문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더해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TMO : Town Management Office)을 마련할 필요

3.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운영

- 마을의 내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행정과 협력하고, 민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거점 확보
 - 주민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을만들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필요
 - 마을만들기 학교, 주민연수 및 교류회, 선진사례 견학, 마을만들기 상담 및 컨설팅,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 시·군 지원센터의 운영예산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마을기업 관련 전문기관, 민간법인을 찾아 위탁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 운영의 직영에서 위탁으로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시·군 지원센터의 설립은 예산확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군 지자체 직영을 통하여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해야 함
 - 하지만, 지원센터의 계속적인 직영운영이 아닌 단기적 운영이 되어야 하며, 지원센터를 민간 독립 법인으로 추진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 마을기업의 시·군 지원센터 조직 또한 관의 직영운영에서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민간 독립법인의 운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성확보, 예산지원, 지속성 유지의 문제 ???

4.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예산확보가 시급
 -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임
- 시·군 단체장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

-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및 의지에 따라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규모 및 방향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임
- 마을과 지역의 자원과 재화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마을공동체의 공동 판매장 구축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교육원의 설립·운영)
 - 마을만들기 교육원 설립·운영을 통한 인재양성과 마을기업 아이템 발굴을 도모하여 자발적인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임

-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시·군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계방안
 -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4장 마을만들기 사업화 및 공동체 지원방안

제1절 마을만들기 사업화 방안

1. 사업콘텐츠

□ 과거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내역

- 과거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지난 60년대 이후 낙후지역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추진
 - 관 주도 하에 추진되어 농촌 등 낙후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부분 제한(지경배 외, 2008; 송영필 외, 2005)
-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

<표 4-1> 2007년 이전 마을만들기 관련 최근 10년간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주관부처	추진년도	추진기간	지원내용	사업목적	선정방식
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부	2004	3-5년	70억원/소권역(3-5마을)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농촌다면적 기능의 활용	공모제
②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2002	1년	2억원/마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공모제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농진청	2002	2년	2억원/마을	농촌전통문화의 발굴, 자연경관 보전	공모제
④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행자부	2003	10년	10억원/마을	도농연결거점지역육성, 도농교류증진	공모제
⑤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	행자부	2001	2년	10억원/마을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조성, 주민자율성 함양	공모제
⑥ 자연생태계 우수마을 지원사업	환경부	2002	-	환경관련사업 우선지원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환경농업 확대	공모제
⑦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1999	2년	5억원/마을	농어민 의식함양, 소득증대, 마을환경 개선	공모제
⑧ 친환경마을 육성사업	경북도 전남도	1999 2000	1년 3년	5천만원/마을 6천만원/마을	환경보전의식 함양, 친환경마을 조성	공모제

자료원: 지경배 외(2008), p152.

-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소도읍 육성」, 「아름마을 가꾸기」, 「정보화마을」 등 마을단위 개발사업 추진
- 또한 「오지 및 도서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로 시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농림부, 문광부 등과 함께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표 4-2> 2007년 이후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지원사업

관련부처(추진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보건복지부(2000)	자활공동체 사업(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로 창업지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과 연계
고용노동부(2007)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인증제(사회적기업) 및 지정제(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자치단체 이관('10),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지역사회공헌형' 추가('11)
행정안전부(2010)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속가능 일자리사업으로서 '마을기업육성사업' 병행추진 - 201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화, 고용부 사회적기업 사업과 협력 등 추진
지식경제부(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 1차 시범사업 추진 후 종료 -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
문화관광부(2010)	예술꽃씨앗학교 등	- 예술강사 파견 등 낙후지역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재생·사회통합 등 마을활성화 효과 견인
농식품부(2011)	농어촌 공동체육성사업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조직 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2011년 말 동법 제정 및 2012년말 발효에 따라 기존의 영리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음 - 추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부처별로 시행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음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의 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

- 본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을 발굴하는 것으로서 마을단위의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내용은 다양할 수 있음
 - 과거 새마을운동의 경우 전근대화 단계의 마을들에 대한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마을별로 필수적인 인프라의 구축 등 대체로 유사한 혹은 일률적인 사업내용이 가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형성
 - 또한 현재 마을주민 사회는 혈연사회에 가까운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구성도 달리 고령화·다문화 및 보다 이해관계 집단에 가까운 유기적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유도 및 사업내용의 선정은 마을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
 - 요컨대 사업내용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화시키는 경우, 지역특성이

가미되지 않은 친편일률적인 사업내용으로 추진되기 쉽고 전시행정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 동시에 현재 지방공무원의 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유형별로 수립된 모델 혹은 전형(prototype)에 따라 물리적 자산투자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견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 기존 발전국 6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녹색성장 및 생활공감정책 사업 등을 포괄하여 발전국의 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사업콘텐츠의 발굴 및 정리는 국 차원에서 각 과별로 조사 및 정리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녹색성장과 및 자전거정책과·생활공감정책과 추진사업 : 녹색길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중수도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친수공간 조성,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정비, 슬로시티 등 민간협력 및 지원 등
- 신활력사업의 사업내용은 하기 표 참조

<표 4-3> 신활력사업의 유형과 사례

유형	사례
지역특산물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공룡나라 웰빙농업(고성군)
지역문화관광 개발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박물관고를 육성사업(영월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HAPPY 700 브랜드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마케팅(진안군)
교육.인재 육성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국제화교육(거창군)
생명.건강산업 육성	생약초특화지역 조성(정선군), 인삼.약초 오감체험형 건강사업(금산군)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생물산업 경쟁력강화(완도군),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브랜드화(울릉군)

김현호 외(2006)

-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사업내용은 다음 <표 4-4> 참조

<표 4-4> 소도읍 육성사업의 유형과 사례

분류	입지특성	육성방향
관광 소도읍	문화유적.온천.공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소도읍 (예시 : 단양읍, 구례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등의 부존 관광자원 보존 중점 •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위탁시설 등 유치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철의식함양 사업 병행
자원보유 소도읍	지하자원의 매장.채굴.생산 등의 특유성이 있는 소도읍 (예시 : 상동읍, 사북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굴한 광물의 저장.수송.인프라 확충 •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위생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확보
해안어업 소도읍	어항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갖춘 소도읍 (예시 : 구룡포, 주문진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맞는 어항기반시설 확충 • 수산물 저장.판매, 어가안정을 위한 냉동.가공 시설 유치 • 지역여건에 맞는 육운.해운 교통체계 구축
교육.문화 소도읍	교육시설이 다수위치한 대도시 주변 소도읍 (예시 : 안강읍,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박물관 등 건전교육환경 조성 문화교육시설 확충 • 외부지역 유학생 수용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 • 위탁시설 등 교육분위기 저해시설은 제외
접경지역 소도읍	대규모 군이 주둔하고 군사시설이 위치한 소도읍 (예시 : 철원읍, 화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가족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및 보건위생 시설 확충 • 외지 먼회객 및 군인 등을 상대한 시장 유통시설 정비

행정자치부(2007)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포괄보조사업으로서 통합보조율 국고 80%, 지방비 20%

<표 4-5>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유형과 사례

내역사업	사업내용(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지역소득 증대	• 유통·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시설 등
지역 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 보호수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지역 역량강화	• 주민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 제고, 기본계획수립비 등 S/W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홈페이지(www.mopas.go.kr)

-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사업내용은 하기 표 참조

<표 4-6>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의 사업내용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2010	희망근로	親서민 사업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 다문화이민자 영어교사활용 -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 -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교육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생산적 사업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관련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⑩ 주민숙원사업
		마을기업 (예시) ① 지역자원 활용법 : 지역특산물·문화·자연자원 활용 사업 ② 자원재활용·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사업 ③ 다문화 가정·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2011	지역 공동체 일자리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④ 마을기업육성사업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⑧ 주민숙원사업: 스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 생활용품 수리사업 등	③ 청년일자리사업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을기업 (집중육성관리 5대분야 마을기업) ② 자전거도로 활성화 ④ 정보화마을 연계	①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 ③ 퇴직자귀농인 활용 ⑤ 농어촌 특산물 활용 마을기업
2012	지역 공동체 일자리	① 중소기업 취업지원 ② 폐자원 재활용사업 : 방치자전거, 중고가전·가구 등 수거수리 및 수리센터 운영, 산림부산물 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제작, 음식물쓰레기·폐자원 재활용사업 ③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사업, 취약계층 전가가스(상)수도 시설 개보수,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폐공사 개보수 및 정비 ④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 사업, 다문화 여성(보육·외국어)교사 활용, 외국인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사업, 다문화여성 모국문화 홍보사업 ⑤ 재해예방 지원사업 : 스킨존 어린이 안전관리, 물놀이사고 예방, 하천제방수리시설 취약지구정비, 하수(배수)시설 퇴적물 준설사업, 도로변 안전시설 정비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 영세기업 밀집지역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문화유적 복원 및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공공시설물 벽화그리기사업, 전통문화시설 개·보수, 공원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개·보수 ⑦ 국가 시책사업 • 친수공간 주변지역 시설 및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등 보수관리 및 친수 공간 시설 정비,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희망의 숲 고사목 정비 및 식재, 꽃길 조성, 쓰레기 수거 등) • 향토 전통기술 전수 사업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 인감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인감대장 2만매 이상 읍동) ⑧ 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 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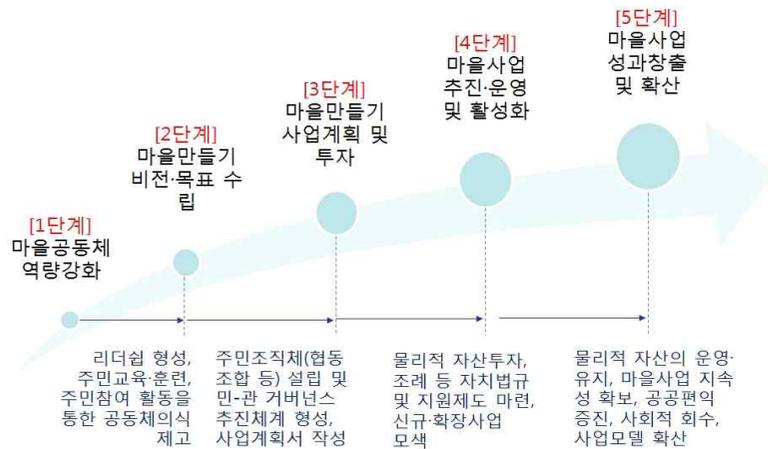
□ 행안부형 마을만들기 사업콘텐츠(안)

- [1안] 기존의 지역녹색성장과의 사업 및 추후 기후변화대응 지방자치에 포커스를 둔 사업콘텐츠(안)
 -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탄소저감,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표방하는 마을
 - **[순환마을경제 만들기]** 기후친화적 지역특화산업 발굴·활성화 및 지역녹색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및 도시농업 활성화, 로컬머니 및 전통시장·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구매 및 생협운동 등
 - **[녹색전환마을 만들기]** 대중교통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건축물의 친환경성 및 에너지효율 제고(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포함), 공공시설 개·보수, 동네마당 조성 및 담장허물기, 마을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등
 - **[기후적응마을 만들기]** 녹색길·바람길 조성, 슬로시티 조성, 물순환마을 만들기, 도시녹화·방재림 조성 및 시민참여형 재난대응, 기후변화적응 특산물 개발 등
- [2안] 기존 지역발전정책국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지역녹색 성장과 사업콘텐츠(안)
 - 상기 유형별 사업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발전정책국 및 행정안전부 내 타 국의 필요사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도출이 필요하며, 하기 내용은 그간 발전국 내에서 추진되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 안임
 - **[창조문화마을 만들기]** 영세기업 밀집지역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문화유적 복원 및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공공시설물 벽화그리기사업, 전통문화시설 개·보수, 공원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개·보수,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향토 전통기술 전수 사업
 -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 사업, 다문화 여성(보육·외국어)교사 활용, 외국인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사업, 다문화여성 모국문화 홍보사업 등
 - 기타 고려사항: 국가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정보화마을·스킨존 등 기존 행안부 타 실·국 사업, 퇴직자·귀농인·청년실업 관련 사업 등

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

□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과 국비지원 방식의 개선

-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 혹은 주민참여가 핵심 성공요인이므로, 주민역량의 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역량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 기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관리하기에 용이한 시설투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짐
 -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모든 단계에서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액의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한 초기단계부터, 이후 강화된 마을공동체 조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큰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이후의 단계까지 그 지원내용과 규모의 차등화 방안이 필요함



<그림 4-1>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단계와 단계별 추진사항

- 현행 국비지원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투자 중심으로 단기간 투자예산 분배행태가 존재하므로, 상기와 같은 단계별 차등지원과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이 되기 어려움
 - 본질적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큰 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현금 회수 가능성 혹은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공공의 편익이 증대되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대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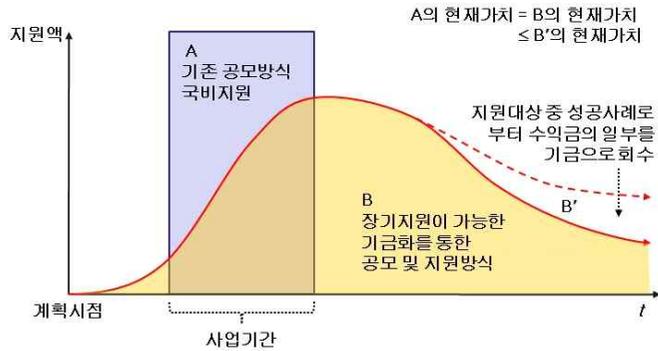
볼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찬가지로 공공투자의 회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비화폐적 공공편익의 형태로 표출되므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 없음
- 그러나 현행 대부분의 공모방식의 국비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에 기 반영된 주어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기간 내에 이를 전액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1-2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대상지의 선정부터 지원까지 완료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집행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혹은 마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됨
- 즉, 마을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앙부처 일정에 맞추거나,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을에 지원하기보다는 선정조건에 적당히 부합하는 지원대상을 포함하는 등 본질적인 사업의 취지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존재
- 결과적으로 현행 국비지원 방식을 취하는 경우 관 주도의 전시성 행정이라는 통상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개연성이 존재
- 요건대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정책 차별화 혹은 기금화를 통해 꼭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필요시점에 적정액의 투자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1안]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의 다단계화 및 단계별 차등화된 지원방안 추진, [2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화를 통해 상시지원 및 지원액수의 탄력적 적용 등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검토
 - 특히 장기적인 기금화 추진의 경우, 성공적인 마을단위로 창출된 수익이나 편익을 기부하는 형태로 기금의 회수 등을 통해 공공투자의 사회적 회수가능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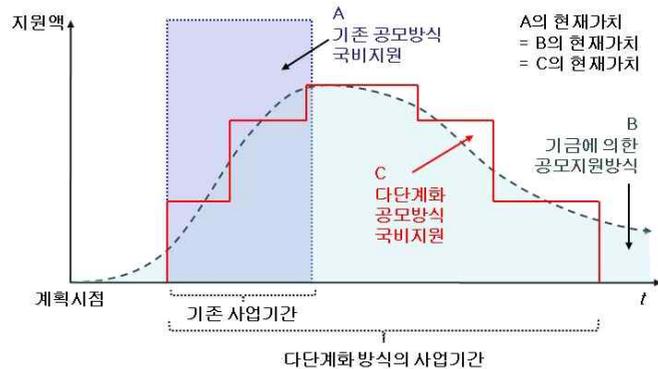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사업 국비지원 방식의 원칙과 방향

① 사업기간의 장기화 추진

-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의 주민참여 및 조직화 역량의 형성부터, 마을단위의 비전·목표 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자산의 투자까지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긴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



<그림 4-2> 기존 공모방식 국비지원 사업의 장기화기금화



<그림 4-3> 기존 공모방식 국비지원 사업의 다단계화

- ② 공모방식의 2단계화 추진, 혹은 단계를 지속적으로 늘려 기금화를 추진
 - 예컨대 단기간 공모방식 지원금액의 현가와 장기지원이 가능한 다단계 지원금액의 현가가 동일하도록 적절한 중장기적 지원계획 수립
- ③ 사업대상지의 선정 후, 계획단계 → 도입단계 → 운영단계 → 확산단계로 나누어 앞의 세 단계에서 차등화 된 지원
 - 특히 대규모의 물리적 투자가 수반되는 도입단계에 대한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소규모 지원액이 필요한 계획단계의 사업대상지를 확대
 - 주기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결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지원규모를 결정

- ④ 지방비 및 민자매칭 기준을 차별화하고, 지원사업 성과의 일부를 회수하여 타 마을로 확산을 촉진
 - 특히 도입단계에서는 자치단체와 마을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로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의 긴장감을 제고
 - 운영단계에서도 지원사업 성과가 현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일정부분(10%)을 기금으로 반환시키고, 무형자산의 증가 등 비화폐적인 경우라도 재능기부 등을 활성화시켜 공공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회수 및 타 마을로의 확산을 촉진시킴

□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모 및 지원방식(안)

○ 마을당 지원규모의 결정

- 1-2단계 주민의 역량형성 및 비전·목표 수립,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로 교육·훈련 및 조직화 등에 대한 소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당 1천만원~1억원 정도로 상황에 맞게 지원
 - ※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필요시 마을기업 설립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적정규모의 지원액 필요
- 3단계 물리적 설비투자 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성과를 보인 사업대상지를 선별하여, 필요한 마을자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마을당 2억~30억원까지 차등 지원
 - ※ 구체적인 시설·설비의 종류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평균적으로 마을당 10억원 정도를 지원
- 4단계 운영·유지 및 확장단계에서는 운영·유지에 필요한 지원액과 확장을 위한 지원액을 차등화하여 지원
 - ※ 운영 및 유지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초기 설비투자액의 10~20%임을 감안할 때 3단계 투자지원금의 10~20%를 지원(평균적으로 마을당 1~2억원 규모)하며, 사업확장을 위한 지원액은 3단계의 50% 이내(평균적으로 마을당 1~15억원 규모)로 지원
- 5단계 성과창출 및 확산단계에서는, 매년마다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의 경제적 편익(예: 마을기업의 연간순이익)의 10%를 회수하여 타 마을로 확산시 투자사업비(혹은 마을만들기 기금)로 회수
 - ※ 마을조직 혹은 마을기업의 정관 등에 명시하며, 순이익이 화폐가치로 계상이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공공투자의 사회적 회수를 실현하고, 타 마을로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투자비로 환원

○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적정 배분(안)

<표 4-7>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단계	지원금액	지원 방안
1·2	5천만원~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역량형성 및 비전·목표수립 · 교육훈련비용 지원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적정규모의 지원액 필요
3	2억원~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설비 투자 단계 · 1·2단계 성과 판단 후 마을자산에 대한 투자금 지원 - 구체적인 시설·설비 종류 등 심사후 지원
4	1억원~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유지 및 확장 단계 (차등지원) -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3단계 투자비의 10~20%지원 - 사업확장의 경우 3단계 투자비의 50%이내
5	연간 순이익 10%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 및 확산단계 - 경제적 편익 회수 후 재 투자 - 환폐까지 계상 불가능시 재능기부등의 방안 마련

○ 그림 <4-4>는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을사업의 5단계 추진 체계도를 나타낸 것으로 마을내 인적요소, 사회적 자본요소 등의 차이 등과 각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됨

- 즉,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른 토목이나 건설 중심의 물리적이고 구조적 물질의 형성 과정과는 달리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공동체와 주민들의 의지와 참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물질적 마을만들기와는 구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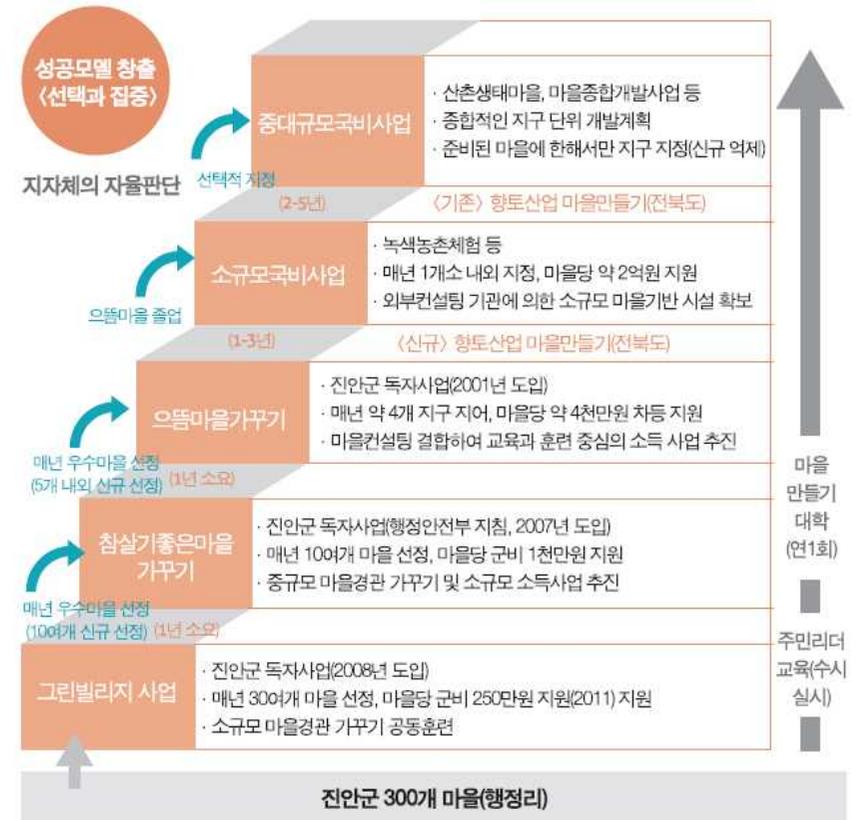
- 진안군은 마을사업 5단계에서 초기단계인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해 진안군내 행정리 중심의 300개 마을들이 참여하게 하며, 주민리더 교육 등을 수행하고, 소규모 마을경관 가꾸기 등을 통해 공동 훈련을 수행함

- 한편, 그린빌리지 사업을 졸업하며 매년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다음단계로 진입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전체 5단계는 그린빌리지사업,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으뜸마을가꾸기 등으로 진행되며, 3단계 으뜸마을을 졸업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4, 5단계의 소규모 또는 중대규모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함

- 이러한 5단계 지원책은 자칫 기초적 역량이 준비 안 된 마을들에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의 국비사업 형태로 일정금액이 일괄 투입되고, 마을역량 부족과 관리부재 등에 의한 성과없는 마을사업으로 종결되던 지난시기의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림 4-4> 진안군 마을사업의 5단계 추진체계도(국토연구원, 2011)

3. 단계별 모니터링 및 선정기준

□ 대상지 선정 후 1-2단계인 계획단계에서의 추진·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 마을만들기 대상지 선정 후 계획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마을주민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마을주민 주도로 사업 운영 및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함

- 둘째, 지역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여야 함
 - ※ 예컨대 자연적 혹은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기인한 지역의 현안과 관계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것에 해당함
- 셋째, 도입되는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마을주민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계획을 심사해야 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의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구축여부 등을 검토
- 넷째, 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마을주변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체계,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는지 등을 검토
- 상기와 같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행점검 지표들을 마련하여, 3단계 투자단계 이후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표개발 등은 모니터링 및 선정 등을 담당하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수준의 지원조직에서 관리

□ 3단계 투자단계 및 4단계 운영·유지 및 확장단계의 모니터링

- 3단계 투자단계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항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내용 충실도,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해당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필요
 - 또한 4단계 이후를 스스로 진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의 선정 및 보고 이행계획 등
- 4단계 운영·유지 및 확장 단계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항
 - 사업추진의 점검을 위한 진행률 지표 및 추진성과 지표, 파급효과 지표, 창출된 편익의 규모 및 회수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제2절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추진 방안

1. 기존한계 및 방향

- 기존 지역공동체 관련 다양한 사업들은 각 사업들간의 총체적인 연관성이 적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성을 갖기보다는 적게는 1-2년, 길어야 3-4년에 걸친 단기 또는 중기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일시적 사업으로 한정된 것이 사실임
- 지역 및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은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
-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해당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역시민, 전문가 집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우선 지역공동체 지원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상세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추진체계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각 단위별로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지역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2.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원칙 및 방향

-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유관기관별 난립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부처별로 수립하고 있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의 동시적 경쟁적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임

<표 4-8>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추진내용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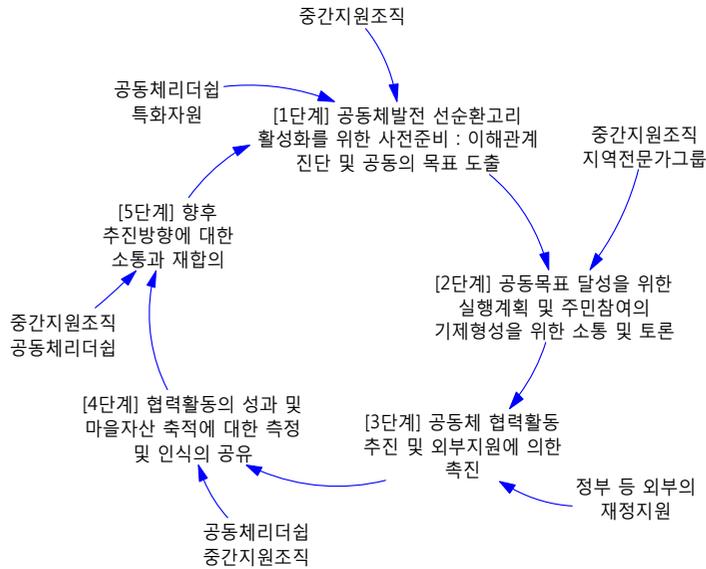
구분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실행조직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 지역특성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공동체사업 발굴 추진이 중요	◦ 중간지원조직 성격부여 (전문가그룹 활성화)	◦ 법, 제도, 행정정책 지원
주요 내용	◦ 각종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 그린마을 및 슬로시티 ◦ 에너지자립마을 ◦ 위기대응 회복공동체 ◦ 마을기업 및 Community Business ◦ 다문화공동체, 대안교육공동체 등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관련	◦ 실행조직 계층화: 행안부-중앙일행센터-지방센터-마을조직(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 중앙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지방센터: 독립적 지원센터(서울, 전북 등)와 전담부서형태(경기)등 가능 ◦ 관리 및 운영 위탁어부	◦ 마을만들기 위원회(기본계획, 연차 계획수립, 행정정책 지원) ◦ 민간협력커비넌스의 형태로 운영, 일정부분 독립성 보장 ◦ 중앙 및 지방위원회 구성과 지원 등
비고 (예시)	◦ 행정안전부의 녹색길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희망 집수리, 지역특산물-지역자원활용 마을기업, 어린이 안전도우미, 자원재활용-자전거 일자리사업 등 기존 발전국 사업의 포괄 승계 가능	◦ 주민자치센터 ◦ NGO, 연구조직, 민간기구 활용성 검토	◦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기업 육성법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TMO와의 연계 ◦ 법령제정과 조례관계성 검토

- 따라서 중앙부처는 부처간 긴밀한 협의조정회의 또는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사업내용이나 사업지침 등을 일정부분 통일하여 시달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김선기 외, 2011: 85)
-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가 하나의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지자체가 담당사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지역과 마을과의 긴밀한 결합력이 강조되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조직과 별도로 이를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형태의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 제도, 행정정책 지원으로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3. 제도적 정책추진 방안

- 지역공동체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 기반의 경우 각 주체별 별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입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를 위해 (가칭)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또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발굴을 담당하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연구분석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진흥원 혹은 중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정부 그리고 NGO 및 외부전문가 등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간 상호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 즉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한편 중앙정부의 일회적 국비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육성) 기금을 설치 및 운영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공동체 활성화 기금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일회적 국비지원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함으로써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세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 활성화 기금을 활용한 중앙지원센터 중심의 장기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소액 차등지원 등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성공적인 경우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기금회수를 통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산개되어 있는 CB센터 등 각종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마을만들기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림 <4-5>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 추진과 지원전략을 도식화한 그림으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전문가그룹의 역할과 지원 등을 표현하고 있음



<그림 4-5>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추진 및 지원전략(전대욱 외, 2012)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률 및 조례제정 추진

-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로서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상위법인 관련 법률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기본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그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와 지역주도성 확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두어야 하고, 이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및 재정확보 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이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

5.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중개, 또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역량이 큰 곳에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되,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그 위탁계약은 갱신 또는 해제가 가능함
-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그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즉 중간지원조직은 상담창구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전문 서비스는 해당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함(김선기 외, 2011: 92).

6. 중앙과 광역시도 및 시군 마을단위 중간지원조직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만으로는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각급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광역시도와 시군 지자체 및 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간을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해두어야 함
-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마련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가령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대부분의 조례에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은 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그리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 등이 해당함
- 이와 함께 지역의 리더로서 지도자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등 광범위하게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경우에 따라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하고 이들은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TMO : Town Management Office)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공동체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주도성일 것임
-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사업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시스템 형태의 사업지원방식은 단기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원관행은 중장기적 지역공동체 발전사업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기적, 단발적 국비지원 형태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금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이외의 사용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제5장 결론

□ 결론 및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2장에서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법제 및 자치법규를 검토하였음. 자치단체 조례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 두 번째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마을위원회, 세 번째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자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며,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뒷받침이 중요함
- 3장에서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의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관련 기본사항, 형태, 조직구성,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제공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으로,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태와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워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가능함

-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역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가령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 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TMO : Town Management Office)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장에서는 앞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분석, 사례분석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화방안 및 지역공동체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함
- 우선 기본 방향으로 지역특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토대로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함
- 지역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지역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 삶의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가 하나의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지자체가 담당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지역 및 마을과의 긴밀한 결합력이 강조되는 공동체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조직과 별도로 이를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형태의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 제도,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의 경우 각 주체별 별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입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제정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역량이 큰 곳에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되,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계약적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그 업무를 윈스톱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를 갖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주도적인 방향으로, 지금까지의 단기적, 단발적 국비지원 형태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가칭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및 법률안

1)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당 시, 군, 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 구 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구 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란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학교"란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 해당 시, 군, 구의 장(이하 "기초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기초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해당기초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
초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00명을 포함하여 일정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포
함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장의 위촉 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00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일정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일정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일정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기초자치단체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00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
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기초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
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
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000 호, 2000.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광역시장의 장의 책무) 00광역시장의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0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광역시장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광역시장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의 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의 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00명과 부위원장 00명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위촉직 위원, 위원중 호선 등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또는 공무원 아닌 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각 자치단체별 기준을 마련하여 두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1. 해당 자치단체 소속 00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자,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주민대표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00년으로 하고 00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00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일정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일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일정(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간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00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3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00년으로 하고,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00시 00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지도 감독) ①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000 호, 2000.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법률안

(가칭)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지역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안전과 회복력 증진을 지향한다.
- 2.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지역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력 증진을 지향한다.
- 3.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 및 협력의 강화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한다.
- 4.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5.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6조 "지역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공동체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체 교육에 관한 사항
- 4. 마을중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 관련 사항
- 5. 마을과 지역자원 실태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7.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제6조(지역공동체 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주도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마을만들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대학, 연구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원, 마을현황 조사 및 사업의 발굴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 사업 수행
3. 마을기업,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역교육기관, 지역공동체조직 등과 협력 및 지원
4.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주민 교육 및 훈련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6.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업

④ 마을만들기 지원기관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 또는 수탁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비의 환수조치 및 위탁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 000 호, 2000. 00. 00>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곽행구·송태갑(2007),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본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리전인포」 통권 제111호.

국토연구원(2005), "도시공동체를 키우자: 도시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의 도전", 「국토정책」 제97호

국토연구원(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ISBN 978-89-8182-826-4

김미현(2010), "일본의 CB사례를 통해 배운다."

김선기·박승규·전대욱·최인수(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정(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김재현(2010),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김재현 등(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건국대학교

김재현(2012),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서울경제」 12년 5월호: 3-12.

김종수(2011), 「유럽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숙(1998), "자생적 지역공동체와 발전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9: 263-290.

김태윤·김진영(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김현호·김선기(2006),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52

김혜인·전대욱(2009), "지속가능발전 모델링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도입: 세 편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 대한 제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0(3): 25-45.

나효우(2011), "Community (Peoples) Driven Development", 제33차 ODA 월례토록 「CSO, 개발을 꿈꾸는가 변혁을 꿈꾸는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17-19.

남석원·이성룡(2012),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이슈&진단」 제47호, 경기개발연구원.

마상진, 엄형식(201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태훈(2002),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3(1): 61-77.

박경(2006),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박승현(2009),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과제: 경제·문화·자치의 공

동체 활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 마을만들기

박인규(2007), “마을만들기의 성격과 현황 그리고 과제”, 「마을만들기 세미나」,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www.maeul.kr)

박지민·윤정숙(2010), “도시 속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03. 제01분과 건축계획: 101-102.

박진도·유정규(2005), “지역혁신과 리더의 역할”, 「지역혁신과 지역리더」, 지역재단 2005년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변미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SDI정책리포트」

서울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

송영필·박용규(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원 「SERI Issue Paper」 2005. 4. 1일자.

송창용·성양경(2009),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REVIEW」 12-30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예철(2012),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기근(2010),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공공행정연구」 11(2): 69-87.

염도민(2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오은주·김선기(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 51호 (2012. 9).

이영범(2011),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논총」 4(2): 97-119.

이일열·박문규(2010), “이미지 연출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웰빙, 녹색 관광 개발 가능성 연구: 대전지역 사례”, 「한국관광학회 2010 대전국제관광학술포럼 및 워크숍」 2010. 4: 17-27.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도시 공동체 운동」: 23-49.

이종열 외(2005), “주민중심적 지역개발 전략: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139-153.

임경수(2009),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maeul.or.kr).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0(제467권)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 센터(2011), “마을에서 온 가을 소식 동고동락”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 센터(2012), “2012년도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 리포트”

정수화·이한주·이화진(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정수화 등(2011),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경기복지재단

정태인(2012),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재단 창립 8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2. 3.

지경배·김장기(2008),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실패와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6(4): 145-166.

지역발전정책국(2012), “2012년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차철욱·곽현근·김선욱·김용우·김재현·이귀원·이상봉·문재원(2011), “지역공동체,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5: 3-316.

최병두(2007),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과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국토연구원.

한상일(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한상일(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1): 223-246.

행정자치부(2007),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성과평가결과 종합보고서(2003~2006완료, 14개 소도읍)”,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 p8.

희망제작소 등(2009-2011), “커뮤니티재생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용방안”,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2011), “지역을 만드는 사람들,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을 위한 도전> ”